

## 고용보험 부정수급



### 신고대상

실업급여, 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 또는 지원금을

-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  -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은 경우
  - 지급받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

부정수급 성립!

예시

해외 재취업 활동 허가 없이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, 이직 사유 허위 신고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, 허위근로 후 고용안정 정부지원금 부정수급

### 신고사건 처리절차

신고접수

신고사실 확인 및 조사

담당 고용보험수사관 배정(30일, 연장가능)

처리결과 통지

포상금 신청

담당 고용보험수사관 배정(14일, 연장가능)  
↳ 단, 피신고자 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시, 결정 후 지급

포상금 지급

## 고용보험 부정수급

### 신고방법



#### 신고상담

-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**1350**
- 전국 지방고용노동(지)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

#### 신고방법

- 인터넷 : 고용24 홈페이지(work24.go.kr), 국민신문고,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(민원-신고센터-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)
- 우편 및 팩스 : 전국 지방고용노동(지)청 부정수급조사 부서

#### 신고요령

- 신고인 인적사항 기재  
\* 익명신고도 가능, 단,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 미통지 / 신고포상금 미지급
-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,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증거자료 제시

1350

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,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.



"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!"  
부탁해서도,  
"실업급여 받게 해줄게!"  
약속해서도

안됩니다.



###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

최대 5,000만원

구분	포상기준	상한액 (1명당 연간 지급한도)
실업급여	부정수급액의 20%	500만원 (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,000만원)
모성보호급여	부정수급액의 20%	500만원
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	부정수급액의 30%	3,000만원



# 자주하는 질문(FAQ)



## #1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?

-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,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는 등 부정수급액·처분횟수,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-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추후 국가전산망 상시 모니터링, 제보,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를 받게 되니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

## #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신고한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, 신고자에게는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
구분	포상기준	상한액 (1명당 연간 지급한도)
실업급여	부정수급액의 20%	500만원 (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,000만원)
모성보호급여	부정수급액의 20%	500만원
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	부정수급액의 30%	3,000만원

- 다만,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(포상금의 지급 제한)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,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,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



## 실업급여

### ▶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및 거짓신고

- 수급자격 신청 당시 취업을 하였거나 다단계 후원판매원, 보험설계사, 인터넷 개인방송 등과 같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
- 수급 중 자영업 영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신고한 경우
- 구직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, 임시직, 배달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

### ▶ 이직사유 거짓신고

- 「자발적」 이직임에도 「비자발적」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상실신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

### ▶ 위장고용, 위장퇴사

-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기간을 채우거나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

### ▶ 대리 구직급여 신청

- 수급자 본인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

### ▶ 허위 구직활동

-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, 친구나 주변 식당에서 얻은 명함만을 제출하여 구직급여 신청
- 취업이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



## 모성보호급여

### ▶ 휴가·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을 통한 부정수급

- 휴가·휴직 기간 중 근로 또는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

### ▶ 휴가·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급여 부정수급

### ▶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

### ▶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부정수급

### ▶ 휴가·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

### ▶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



##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

### ▶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거짓으로 신고 후 정규직 전환, 각종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

### ▶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거짓으로 신고 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부정수급

### ▶ 근무시간·기간을 거짓으로 신고 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,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급

### ▶ 휴업·휴직 동안 근로제공 또는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위조·변조 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

### ▶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4대 보험을 거짓으로 신고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

### ▶ 훈련과정 미운영(훈련시간 조작) 및 훈련생 허위등록(훈련인원 조작)

### ▶ 출석대리체크(출석을 조작)